

고양시 고시 제2026 - 152호

고양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 소규모 GB해제취락)
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소규모 GB해제취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06월 02일
고양시장

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- I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- II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- III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 - 1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) 교통시설

① 도로(변경)

■ 도로 결정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대로	2	11	30~46	주간선 도로	11,160 (-)	대로3-25 성사동 523-5	벽제고양시계 벽제동 산38-14	일반 도로	경고제440호 (74.12.16)	응달촌
폐지	소로	덕1	94	10	집산 도로	32	벽제동 253-4	벽제동 707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3	175	6	국지 도로	250	벽제동 254-3	벽제동 222-2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3	175	4~6	국지 도로	142	벽제동 254-9	벽제동 251-6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3	176	6	국지 도로	312	벽제동 709	벽제동 707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3	176	4	국지 도로	340	벽제동 709	벽제동 707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
구분	구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폐지	소로	덕3	177	6	국지 도로	106	벽제동 710	벽제동 710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응달촌
폐지	소로	덕3	178	6	국지 도로	75	벽제동 710	벽제동 248-3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2	295	8	국지 도로	284 (-)	대자동 1181	대자동 16-2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빈정동
기정	소로	덕3	179	6	국지 도로	451	대자동 16-1	대자동 486-19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3	179	4	국지 도로	192	대자동 16-1	대자동 1194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덕3	180	6	국지 도로	65	대자동 491-1	대자동 490-4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덕3	181	6	국지 도로	66	대자동 486-6	대자동 486-2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대로	3	28	25	보조간선 도로	310 (49)	대로1-11 관산동360-3	대로3-29 사리현동3-1	일반 도로	경고제440호 (74.12.16)	
기정	대로	3	29	25	보조간선 도로	6,532 (254)	사리현동 3-1	성석동 1889	일반 도로	경고제440호 (74.12.16)	사리현
기정	중로	3	190	12~ 15	집산도로	3,765 (34)	대로1-28 사리현동3-14	중로1-117 성사동543-2	일반 도로	고양시고시 제2016-139호 (16.06.03)	
폐지	소로	일2	326	8	국지 도로	140	원당동 778-6	원당동 778-4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일2	327	8	국지 도로	182	사리현동 22-2	사리현동 160-2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일3	427	6	국지 도로	584	원당동 812-4	사리현동 23-117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일3	427	4	국지 도로	318	사리현동 23-177	사리현동 644-6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일3	428	6	국지 도로	86	사리현동 15-1	사리현동 23-51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일3	428	4	국지 도로	366	원당동 812-4	사리현동 23-51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일3	429	4	국지 도로	78	사리현동 4-24	사리현동 161-5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일2	328	8	집산 도로	1,318 (516)	중로3-190 원당동663-1	대로3-29 사리현동908-1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월현
변경	소로	일2	328	8	집산 도로	802 (-)	중로3-190 원당동663-1	대로3-29 사리현동908-1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일3	가	6	집산 도로	516	사리현동 1012	사리현동 646-2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일3	430	6	국지 도로	184	사리현동 64	사리현동 58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일3	430	4	국지 도로	125	사리현동 63	사리현동 661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일3	431	6	국지 도로	383	사리현동 648-2	사리현동 646-2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일3	431	4	국지 도로	263	사리현동 1012	사리현동 646-2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일3	나	6	국지 도로	75	사리현동 1016-1000	사리현동 39-38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
구분	구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폐지	소로	일3	432	6	국지 도로	70	사리현동 43	사리현동 40-10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월현
폐지	소로	일3	433	6	국지 도로	124	사리현동 39-14	사리현동 43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대로	2	11	30~ 46	주간선 도로	11,160 (243)	성사동 523-5	벽제동 산38-14	일반 도로	경고제440호 (74.12.16)	늘봄 마을
기정	소로	1	251	6~10	보조 간선	186	대자동 69-7	대자동 산115-1	일반 도로	고고제78호 (98.09.18)	
기정	소로	덕2	544	8	국지 도로	1,288 (-)	소로 3-535	중로 1-50	일반 도로	고양시고시 제2009-106호 (09.05.04)	
기정	소로	덕2	296	8	국지 도로	530 (216)	대자동 1208	대자동 1205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용복원
변경	소로	덕2	296	8	국지 도로	282 (-)	대자동 1208	대자동 141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3	가	6	국지 도로	250	대자동 1206	대자동 1205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덕3	182	6	집산 도로	123	대자동 1205	대자동 386-2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3	183	6	국지 도로	253	대자동 386-2	대자동 1205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3	183	4~6	국지 도로	148	대자동 386-2	대자동 1205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3	184	6	국지 도로	179	대자동 134-1	대자동 1203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3	184	6	국지 도로	179	대자동 134-18	대자동 1203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덕3	185	6	국지 도로	85	대자동 1204	대자동 136-1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한오동
기정	소로	덕3	338	6	국지 도로	461 (-)	소1-119 대자동 352-7	소3-183 대자동 산169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203호 (06.12.26)	
기정	대로	1	11	35~ 70	주간선 도로	12,300 (68)	동산동 305	내유동 1001	일반 도로	경고제440호 (74.12.16)	
기정	대로	2	11	30~ 46	주간선 도로	11,160 (84)	성사동 523-5	벽제동 산38-14	일반 도로	경고제440호 (74.12.16)	
기정	소로	덕2	296	8	국지 도로	530 (37)	대자동 1208	대자동 1205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2	296	8	국지 도로	282 (37)	대자동 1208	대자동 141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덕3	186	6	국지 도로	314	대자동 274-3	대자동 산171-1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3	187	6	국지 도로	185	대자동 275-2	대자동 277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3	187	6	국지 도로	192	대자동 274-3	대자동 277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한오동
폐지	소로	덕3	188	4	국지 도로	154	대자동 291-1	대자동 314-2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덕3	189	6	국지 도로	512	대자동 145	대자동 311-5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
구분	구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소로	덕3	190	6	국지 도로	311	대자동 298-2	대자동 1209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한오동
변경	소로	덕3	190	4	국지 도로	257	대자동 1177-3	대자동 1209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덕3	191	6	국지 도로	50	대자동 138-5	대자동 138-5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덕3	192	6	국지 도로	58	대자동 294-35	대자동 295-1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덕3	194	6	국지 도로	31	대자동 299-7	대자동 299-7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덕3	195	4	특수 도로	25	대자동 294-9	대자동 294-35	보행자 전용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2	297	8~ 13	국지 도로	838 (348)	신원동 119-28	신원동 293-10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안터
폐지	소로	덕3	196	6	국지 도로	170	신원동 243-19	신원동 243-2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3	197	6	국지 도로	700 (432)	신원동 261-5	신원동 473-10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3	197	6	국지 도로	268 (-)	신원동 산17-10	신원동 473-10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3	나	4~6	국지 도로	432	신원동 261-7	신원동 253-43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덕2	298	8	국지 도로	82	대자동 1188-10	대자동 206-11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새원
기정	소로	덕2	299	8	국지 도로	438 (-)	대자동 233-16	대자동 1188-21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3	198	6	국지 도로	115	대자동 206-7	대자동 205-16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3	199	4	국지 도로	234	대자동 1188-12	대자동 1231-2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3	199	4~7	국지 도로	239	대자동 1188-12	대자동 1231-2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덕3	200	4	국지 도로	86	대자동 206-5	대자동 205-11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2	300	8	국지 도로	823 (19)	종로3-10 오금동378-8	소로3-201 오금동458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큰골
기정	소로	덕3	201	6	국지 도로	553	오금동 458-5	오금동 233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3	201	4~6	국지 도로	439	오금동 458-5	오금동 231-9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3	202	6	국지 도로	235	오금동 225-4	오금동 226-1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3	202	6	국지 도로	231	오금동 225-15	오금동 453-1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3	203	6	국지 도로	49	오금동 226-8	오금동 226-8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3	203	4	국지 도로	49	오금동 226-8	오금동 226-8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덕3	204	6	국지 도로	60	오금동 228-6	대자동 227-8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
구분	구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대로	1	10	35~ 47.5	주간선 도로	5,578 (7)	광로3-7 주교동 270-33	대로3-11 중산동 184-9	일반 도로	경고제11호 (77.01.27)	영심동
기정	소로	3	503	6	집사 도로	123 (-)	식사동 1467-1	식사동 1447	일반 도로	고고제26호 (95.05.15)	
기정	소로	일2	329	8	국지 도로	325 (316)	식사동 569-3	식사동 900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일2	329	6~8	국지 도로	316	식사동 569-2	풍동 900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일2	330	8	국지 도로	363 (354)	식사동 533-1	식사동 514-13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일2	331	8	국지 도로	178	식사동 546-6	식사동 산97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일2	332	8	국지 도로	149	식사동 514-5	식사동 570-2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일3	다	4~5	국지 도로	150	식사동 514-36	식사동 570-2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3	205	6	국지 도로	547	주교동 362-1	주교동 453-1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박제궁
기정	소로	덕2	301	8	국지 도로	243	성사동 664-3	성사동 616-11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수역이
폐지	소로	덕3	206	6	국지 도로	213	성사동 603-10	성사동 605-3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3	207	6	국지 도로	73	성사동 600-2	성사동 594-1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3	207	6	국지 도로	73	성사동 600-2	성사동 661-1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3	208	6	국지 도로	623	성사동 579-6	성사동 603-18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3	208	6	국지 도로	306 (238)	성사동 585-31	성사동 603-18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덕3	209	6	국지 도로	45	성사동 582-4	성사동 598-1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덕3	210	6	국지 도로	41	성사동 585-3	성사동 585-2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3	211	6	국지 도로	312	성사동 663	성사동 579-1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3	211	4~6	국지 도로	312	성사동 567-6	성사동 579-5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
※ 중복결정 사항

- 소로 덕3-208 : 교통광장3(575m²)
- 소로 덕3-211 : 교통광장3(631m²)

구분	구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중로	3	111	12	국지 도로	2,595 (96)	주교동 222-12	내곡동 275-6	일반 도로	고고제144호 (04.12.06)	장터 마을
기정	소로	덕1	95	10	집산 도로	314 (168)	주교동 531-42	주교동 531-22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1	95	10	집산 도로	146 (-)	주교동 531-42	주교동 531-22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2	가	7~8	집산 도로	162	주교동 531-22	주교동 531-22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덕3	213	6	국지 도로	189	주교동 215-5	주교동 218-7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덕3	214	4	특수 도로	20	주교동 218-13	주교동 216-5	보행자 전용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대로	2	12	30~ 31.95	주간선 도로	5,625 (-)	광장44 성사동272-4	영두동고양계 영두동1-44	일반 도로	경고 제280호 (91.07.19)	덤불말
기정	중로	3	62	12~ 27	집산 도로	1,096 (196)	성사동142-1	광장44호 성사동274-31	일반 도로	건고제570호 (71.09.27)	
기정	소로	덕2	302	8~12	국지 도로	349	중3-62 성사동242-6	대로2-12 성사동652-4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2	302	6~12	국지 도로	349	중3-62 성사동242-6	대로2-12 성사동652-4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3	215	6	국지 도로	242	성사동 243-18	성사동 244-5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3	215	4	국지 도로	70	성사동 244-5	성사동 244-5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3	216	6	국지 도로	264	중3-62 성사동242-2	성사동270-23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3	216	6	국지 도로	264 (143)	중3-62 성사동242-2	성사동270-23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덕3	217	6	국지 도로	127	성사동 32-2	성사동 33-1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덕3	218	6	국지 도로	53	성사동 29	성사동 30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덕3	219	4~10	특수 도로	29	성사동 242-3	성사동 244-5	보행자 전용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2	303	8	국지 도로	255 (24)	원흥동 469	원흥동 448-3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윗말
변경	소로	덕2	303	8	국지 도로	231 (-)	원흥동 469	원흥동 448-4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2	304	6~8	국지 도로	246 (66)	원흥동 448-5	원흥동 409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2	304	6~8	국지 도로	180 (-)	원흥동 586	원흥동 409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3	220	6	국지 도로	328	원흥동 448-4	원흥동 430-1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3	220	4	국지 도로	349	원흥동 448-4	원흥동 430-4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3	221	6	국지 도로	218	원흥동 448	원흥동 425-2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3	221	4	국지 도로	230	원흥동 448	원흥동 440-10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
구분	구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폐지	소로	덕3	222	6	국지 도로	187	원흥동 432-1	원흥동 440-2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윗말
기정	대로	2	12	30~ 31.95	주간선 도로	5,625 (-)	광장44 성사동272-4	용두동고양계 용두동1-44	일반 도로	경고 제280호 (91.07.19)	유골
기정	소로	덕2	305	8	국지 도로	577 (477)	원흥동 367-1	원흥동 574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2	305	8~10	국지 도로	577 (477)	원흥동 367-1	원흥동 574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덕3	223	6	국지 도로	40	원흥동 578	원흥동 372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덕3	224	6	국지 도로	22	원흥동 377-2	원흥동 377-2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3	225	6	국지 도로	143	원흥동 377-4	원흥동 377-2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3	225	4	국지 도로	169	원흥동 383-5	원흥동 377-53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덕3	226	6	국지 도로	31	원흥동 383	원흥동 383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2	306	8	국지 도로	678 (118)	지축동 802	지축동 237-1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중고개
폐지	소로	덕3	227	6	국지 도로	310	지축동 210-4	지축동 406-3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3	228	6	국지 도로	300	지축동 237	지축동 390-2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덕3	229	6	국지 도로	73	지축동 207	지축동 406-3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덕3	230	4	국지 도로	34	지축동 395-2	지축동 398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2	307	8	국지 도로	24	지축동 802	지축동 167-20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절골
기정	소로	덕2	584	8	국지 도로	567 (363)	소로3-232 지축동 167-18	지축동 산211도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3	232	6	국지 도로	290	소로덕2-307 지축동 167-20	소로-231 지축동 182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3	232	6	국지 도로	39	지축동 182-6	지축동 182-6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3	233	6	국지 도로	69	소로덕3-231 지축동 803-3	소로덕3-232 지축동 166-31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변경	소로	덕3	233	6	국지 도로	236	소로덕2-584 지축동 803-3	소로덕2-307 지축동 167-18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소로	덕3	234	6	국지 도로	80	지축동 166-26	지축동 163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소로	덕3	235	6	국지 도로	111	지축동 179-3	지축동 167-11	일반 도로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
* ()는 지구내 연장임

■ 도로 변경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소로 덕1-94	-	• 도로 폐지	• 현황도로를 고려한 폭원 및 선형 조정하여 소로 덕3-176으로 편입
소로 덕3-175	소로 덕3-175	• 도로 폭원, 시중점 변경 - B= 6m→4~6m, L= 250m→142m 시점 : 벽제동 254-3 → 벽제동 254-9 종점 : 벽제동 222-2 → 벽제동 251-6	• 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
소로 덕3-176	소로 덕3-176	• 도로 폭원, 연장 변경 - B= 6m→4m, L= 312m→340m	• 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
소로 덕3-177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3-178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3-179	소로 덕3-179	• 도로 폭원, 연장, 종점 변경 - B= 6m→4m, L= 451m→192m 종점 : 대자동 486-19 → 대자동 1194	• 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
소로 덕3-180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3-181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일2-326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일2-327	-	• 도로 폐지	• 현황도로를 고려한 폭원 조정하여 소로 일3-427로 편입
소로 일3-427	소로 일3-427	• 도로 폭원, 연장, 시중점 변경 - B= 6m→4m, L= 584m→318m 시점 : 원당동 812-4 → 사리현동 23-177 종점 : 사리현동 23-117 → 사리현동 644-6	• 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 (소로 일2-327, 소로 일3-427 일부 시설 통폐합)
소로 일3-428	소로 일3-428	• 도로 폭원, 연장, 시점 변경 - B= 6m→4m, L= 86m→366m 시점 : 사리현동 15-1 → 원당동 812-4	• 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 (소로 일3-427 일부, 소로 일3-428 시설 통폐합)
소로 일3-429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일2-328	소로 일2-328	• 도로 연장 변경 - L= 1,318(516)m→802(-)m	• 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 (소로 일2-328, 소로 일3-가 노선 분리)
소로 일2-328	소로 일3-가	• 도로 폭원, 연장, 시중점 변경 - B= 8m→6m, L= 1,318(516)m→516m 시점 : 원당동 663-1 → 사리현동 1012 종점 : 사리현동 908-1 → 사리현동 646-2	• 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 (소로 일2-328, 소로 일3-가 노선 분리)
소로 일3-430	소로 일3-430	• 도로 폭원, 연장, 시중점 변경 - B= 6m→4m, L= 184m→125m 시점 : 사리현동 64 → 사리현동 63 종점 : 사리현동 58 → 사리현동 661	• 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소로 일3-431	소로 일3-431	• 도로 폭원, 연장, 시점 변경 - B= 6m→4m, L= 383m→263m 시점 : 사리현동 648-2 → 사리현동 1012	• 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
소로 일3-431	소로 일3-나	도로 연장, 시종점 변경 - L= 383m→75m 시점 : 사리현동 648-2 → 사리현동 1016-1000 종점 : 사리현동 646-2 → 사리현동 39-38	• 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 (소로 일3-431, 소로 일3-나 노선 분리)
소로 일3-432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일3-433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2-296	소로 덕2-296	• 도로 연장, 종점 변경 - L= 530(216)m→282(-)m 종점 : 대자동 1205 → 대자동 141	• 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 (소로 덕2-296, 소로 덕3-가 노선 분리)
소로 덕2-296	소로 덕3-가	• 도로 폭원, 연장, 시점 변경 - B= 8m→6m, L= 530(216)m→250m 시점 : 대자동 1208 → 대자동 1206	• 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 (소로 덕2-296, 소로 덕3-가 노선 분리)
소로 덕3-182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3-183	소로 덕3-183	• 도로 폭원, 연장 변경 - B= 6m→4~6m, L= 253m→148m	• 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
소로 덕3-184	소로 덕3-184	• 시점 변경 - 시점 : 대자동 134-1 → 대자동 134-18	• 지번 변동에 따른 시점 변경
소로 덕3-185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2-296	소로 덕2-296	• 도로 연장 변경 - L= 530(37)m→282(37)m 종점 : 대자동 1208 → 대자동 141	• 소로 덕2-296, 소로 덕3-가 분리에 따른 연장 및 종점 변경
소로 덕3-186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3-187	소로 덕3-187	• 도로 연장, 시점 변경 - L= 185m→192m 시점 : 대자동 275-2 → 대자동 274-3	• 소로 덕3-186 폐지에 따른 연장 및 시점 변경
소로 덕3-188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3-189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3-190	소로 덕3-190	• 도로 폭원, 연장, 시점 변경 - B= 6m→4m, L= 311m→257m 시점 : 대자동 298-2 → 대자동 1177-3	• 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 (소로 덕3-194, 소로 덕3-190 통폐합)
소로 덕3-191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소로 덕3-192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3-194	-	• 도로 폐지	• 소로 덕3-190 시설 변경에 따른 폐지
소로 덕3-195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3-196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3-197	소로 덕3-197	• 도로 연장 및 시점 변경 - L= 700(432)m→268(-)m 시점 : 신원동 261-5 → 신원동 산17-10	• 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 (소로 덕3-197, 소로 덕3-나 노선 분리)
소로 덕3-197	소로 덕3-나	• 도로 폭원, 연장, 시종점 변경 - B= 6m→4~6m, L= 700(432)m→432m 시점 : 신원동 261-5 → 신원동 261-7 종점 : 신원동 473-10 → 신원동 253-43	• 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 (소로 덕3-197, 소로 덕3-나 노선 분리)
소로 덕2-298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3-199	소로 덕3-199	•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- B= 4m→4~7m, L= 234m→239m	• 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선형 변경
소로 덕3-200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3-201	소로 덕3-201	• 도로 폭원, 연장, 종점 변경 - B= 6m→4~6m, L= 553m→439m 종점 : 오금동 233 → 오금동 231-9	• 현황도로 및 실시계획 인가 선형을 반영한 도로 변경
소로 덕3-202	소로 덕3-202	• 도로 연장 및 시종점 변경 - L= 235m→231m 시점 : 오금동 255-4 → 오금동 255-15 종점 : 오금동 226-1 → 오금동 453-1	• 현황도로 및 실시계획 인가 선형을 반영한 도로 변경
소로 덕3-203	소로 덕3-203	• 도로 폭원 변경 - B= 6m→4m	• 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시설 변경
소로 덕3-204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일2-329	소로 일2-329	• 도로 폭원, 연장, 시점 변경 - B= 8m→6~8m, L= 325(316)m→316m 시점 : 식사동 569-3 → 식사동 569-2	• 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
소로 일2-330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일2-331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일2-332	소로 일3-다	• 도로 폭원, 연장, 시점 변경 - B= 8m→4~5m, L= 149m→150m 시점 : 식사동 514-5 → 식사동 514-36	• 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 (소로 일2-330일부 편입에 따른 연장 증가)
소로 덕3-206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3-207	소로 덕3-207	• 도로 연장 변경 - L= 73m→73m 종점 : 성사동 594-1 → 성사동 661-1	• 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 (미집행 구간 폐지에 따른 연장 감소)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소로 덕3-208	소로 덕3-208	- 도로 연장 변경 및 지구 내 도로 연장 표기 - L= 623m→306(238)m - 시점 : 성사동 579-6 → 성사동 585-31 - 중복결정 사항 표기 - 교통광장3 중복결정(A=575m)	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 (미집행 구간 폐지에 따른 연장 감소)
소로 덕3-209	-	도로 폐지	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3-210	-	도로 폐지	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3-211	소로 덕3-211	- 도로 폭원, 시종점 변경 - B= 6m→4~6m - 시점 : 성사동 663 → 성사동 567-6 - 종점 : 성사동 579-1 → 성사동 579-5 - 중복결정 사항 표기 - 교통광장3 중복결정(A=631m)	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 및 지번 변동에 따른 시종점 변경
소로 덕1-95	소로 덕1-95	- 도로 연장 변경 - B= 10m, L= 314(168)m→146(-)m	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 (소로 덕1-95, 소로 덕2-가 노선 분리)
소로 덕1-95	소로 덕2-가	- 도로 폭원, 연장, 시점 변경 - B= 10m→7~8m, L= 314(168)m→162m - 시점 : 주교동 531-42 → 주교동 531-22	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 (소로 덕1-95, 소로 덕2-가 노선 분리)
소로 덕3-213	-	도로 폐지	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3-214	-	도로 폐지	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2-302	소로 덕2-302	- 도로 폭원 변경 - B= 8~12m→6~12m	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
소로 덕3-215	소로 덕3-215	- 도로 폭원, 연장 및 시점 변경 - B= 6m→4m, L= 242m→70m - 시점 : 성사동 243-18 → 성사동 244-5	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
소로 덕3-216	소로 덕3-216	- 지구 내 도로 연장 표기 - L=262m→262(143)m	오기 정정(지구 내 연장 표기)
소로 덕3-217	-	도로 폐지	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3-218	-	도로 폐지	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3-219	-	도로 폐지	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2-303	소로 덕2-303	- 도로 연장 및 종점 변경 - L= 255(24)m→231(-)m - 종점 : 원흥동 448-3 → 원흥동 448-4	소로 덕3-220 연장 증가에 따라 구역 내 제척
소로 덕2-304	소로 덕2-304	- 도로 연장 및 시점 변경 - L= 246(66)m→180(-)m - 시점 : 원흥동 448-5 → 원흥동 586	지구 내 도로 폐지에 따른 연장 변경
소로 덕3-220	소로 덕3-220	- 도로 폭원, 연장, 종점 변경 - B= 6m→4m, L= 328m→349m - 종점 : 원흥동 430-1 → 원흥동 430-4	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
소로 덕3-221	소로 덕3-221	- 도로 폭원, 연장, 종점 변경 - B= 6m→4m, L= 218m→230m - 종점 : 원흥동 425-2 → 원흥동 440-10	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
소로 덕3-222	-	도로 폐지	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소로 덕2-305	소로 덕2-305	• 도로 폭원 및 선형 변경 - B= 8m→8~10m	• 공유지 추가 편입 및 소로 덕2-305 종점 변경을 고려한 도로 선형 조정
소로 덕3-223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3-224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3-225	소로 덕3-225	• 도로 폭원, 연장, 시종점 변경 - B= 6m→4m, L= 143m→169m 시점 : 원흥동 377-4 → 원흥동 383-5 종점 : 원흥동 377-2 → 원흥동 377-53	• 현황도로 및 국·공유지를 고려한 도로 변경 (소로 덕3-225, 소로 덕3-226 통폐합)
소로 덕3-226	-	• 도로 폐지	• 소로 덕3-225 시설 변경에 따른 폐지
소로 덕3-227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3-229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3-230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소로 덕3-232	소로 덕3-232	• 도로 연장 및 시종점 변경 - L= 290m→39m 시점 : 지축동 167-20 → 지축동 182-6 종점 : 지축동 182 → 지축동 182-6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미집행 구간 폐지 및 부분 집행구간 분리
소로 덕3-233	소로 덕3-233	• 도로 연장 및 시종점 변경 - L= 69m→236m 종점 : 지축동 166-31 → 지축동 167-18	• 소로 덕3-232의 부분집행 구간과의 시설 통폐합을 위한 연장 및 종점 변경 (소로 덕3-232 일부, 소로 덕3-233 시설 통폐합)
소로 덕3-235	-	• 도로 폐지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

② 주차장(변경)

■ 주차장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		13,545	감) 13,545	-	-	
폐지	99	응달촌 노외주차장	벽제동 241 일원	600	감) 600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100	빈정동 노외주차장	대자동 16-1 일원	500	감) 500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101	사리현1 노외주차장	사리현동 15 일원	511	감) 511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102	사리현2 노외주차장	원당동 778-4 일원	787	감) 787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103	월현 노외주차장	사리현동 39-1 일원	347	감) 347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104	늘봄마을 노외주차장	대자동 67-4 일원	552	감) 552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105	용복원 노외주차장	대자동 376-1 일원	520	감) 520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106	한오동1 노외주차장	대자동 산173-4일원	502	감) 502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107	한오동2 노외주차장	대자동 1177 일원	700	감) 700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108	안터 노외주차장	신원동 243-2 일원	559	감) 559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109	새원 노외주차장	대자동 206-11 일원	490	감) 490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110	큰골 노외주차장	오금동 246-4 일원	558	감) 558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111	영심동 노외주차장	식사동 산97 일원	494	감) 494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112	박제궁 노외주차장	주교동 378-1 일원	540	감) 540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113	수역이1 노외주차장	성사동 605 일원	550	감) 550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114	수역이2 노외주차장	성사동 582-3 일원	1,080	감) 1,080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116	장터마을 노외주차장	주교동 222-3 일원	355	감) 355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117	덤불말1 노외주차장	성사동 277-2 일원	446	감) 446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118	덤불말2 노외주차장	성사동 산118-3 일원	279	감) 279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119	윗말 노외주차장	원흥동 440-2 일원	413	감) 413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120	유골1 노외주차장	원흥동 372 일원	977	감) 977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121	유골2 노외주차장	원흥동 375-11 일원	360	감) 360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122	중고개 노외주차장	지축동 208-3 일원	488	감) 488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123	절골1 노외주차장	지축동 167-1 일원	403	감) 403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폐지	124	절골2 노외주차장	지축동 182 일원	534	감) 534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
■ 주차장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99	응달촌 노외주차장	• 주차장 폐지(면적 : 600m ²)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※ 폐지 후 공공기여대상부지로 관리
100	빈정동 노외주차장	• 주차장 폐지(면적 : 500m ²)	
101	사리현1 노외주차장	• 주차장 폐지(면적 : 511m ²)	
102	사리현2 노외주차장	• 주차장 폐지(면적 : 787m ²)	
103	월현 노외주차장	• 주차장 폐지(면적 : 347m ²)	
104	늘봄마을 노외주차장	• 주차장 폐지(면적 : 552m ²)	
105	용복원 노외주차장	• 주차장 폐지(면적 : 520m ²)	
106	한오동1 노외주차장	• 주차장 폐지(면적 : 502m ²)	
107	한오동2 노외주차장	• 주차장 폐지(면적 : 700m ²)	
108	안터 노외주차장	• 주차장 폐지(면적 : 559m ²)	
109	새원 노외주차장	• 주차장 폐지(면적 : 490m ²)	
110	큰골 노외주차장	• 주차장 폐지(면적 : 558m ²)	
111	영심동 노외주차장	• 주차장 폐지(면적 : 494m ²)	
112	박제궁 노외주차장	• 주차장 폐지(면적 : 540m ²)	
113	수역이1 노외주차장	• 주차장 폐지(면적 : 550m ²)	
114	수역이2 노외주차장	• 주차장 폐지(면적 : 1,080m ²)	
116	장터마을 노외주차장	• 주차장 폐지(면적 : 355m ²)	
117	덤불말1 노외주차장	• 주차장 폐지(면적 : 446m ²)	
118	덤불말2 노외주차장	• 주차장 폐지(면적 : 279m ²)	
119	윗말 노외주차장	• 주차장 폐지(면적 : 413m ²)	
120	유골1 노외주차장	• 주차장 폐지(면적 : 977m ²)	
121	유골2 노외주차장	• 주차장 폐지(면적 : 360m ²)	
122	중고개 노외주차장	• 주차장 폐지(면적 : 488m ²)	
123	절골1 노외주차장	• 주차장 폐지(면적 : 403m ²)	
124	절골2 노외주차장	• 주차장 폐지(면적 : 534m ²)	

③ 철 도(변경없음)

■ 철도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면적(m ²)			연장 (m)	면적 (m ²)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				
기정	4	교외선	일반 철도	토당동 182-1	선유동 고양시계	시청	10,580 (5)	147,044 (167)	경고제358호 (88.12.31)	한오동

* ()안은 지구내 철도연장 및 면적

나) 공간시설

① 녹지(변경)

■ 녹지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m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			1,072	감) 398	674	-	
폐지	94	사리현 녹지	완충녹지	원당동 778-6 일원	398	감) 398	-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
기정	1	늘봄마을1 녹지	경관녹지	대자동 66-7 일원	99	-	99	고양시 고시 제2023-55호 (23.02.03)	
기정	2	늘봄마을2 녹지	경관녹지	대자동 66-6 일원	70	-	70	고양시 고시 제2023-55호 (23.02.03)	
기정	3	늘봄마을3녹지	경관녹지	대자동 67-2 일원	103	-	103	고양시 고시 제2023-55호 (23.02.03)	
기정	4	늘봄마을4녹지	경관녹지	대자동 1190 일원	58	-	58	고양시 고시 제2023-55호 (23.02.03)	
기정	5	늘봄마을5녹지	경관녹지	대자동 67-2 일원	221	-	221	고양시 고시 제2023-55호 (23.02.03)	
기정	6	늘봄마을6녹지	경관녹지	대자동 산115-2 일원	123	-	123	고양시 고시 제2023-55호 (23.02.03)	

■ 녹지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94	사리현 녹지	• 완충녹지 폐지(면적 : 398m ²)	•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완충녹지) 폐지 ※ 폐지 후 공공기여대상부지로 관리

② 광장(변경)

■ 광장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m ²)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3	고양JCT	교통광장	원당동 264-4 일원	387,041 (15,614)	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564호 (15.08.07)	수역이
변경	3	고양JCT	교통광장	원당동 264-4 일원	387,041 (18,002)	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564호 (15.08.07)	수역이 (중복결정 : 소로 덕3-208(575m ²), 소로 덕3-211(631m ²))

* ()안은 지구내 면적

■ 광장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3	고양JCT	• 편입면적 오기 정정 - A=15,614㎡ → 18,002㎡ • 중복결정 사항(구역 내 면적) - 소로 덕3-208 : A=575㎡ - 소로 덕3-211 : A=631㎡	• 구역 내 교통광장 시설 편입면적 오기 정정 및 중복결정 사항 미기입에 따른 표기

다) 공공문화체육시설

① 공공청사(변경없음)

■ 공공청사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치	면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고
기정	87	덤불말 공공청사	동사무소	성사동 34-1 일원	2,098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사회복지 시설40 중복결정

② 사회복지시설(변경없음)

■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고
기정	40	덤불말 사회복지시설	성사동 34-1 일원	2,098	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공공청사 87 중복결정

라) 방재시설

① 하 천(변경없음)

■ 하천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치			연장 (m)	폭원 (m)	면적 (㎡)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점	종점	주 요 경과지					
기정	16	고사리골천	소하천	성사동 277-2	성사동 34-1	-	103 (48)	7~17	1,137 (689)	경기도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덤불말
기정	17	중고천	소하천	지축동 411	지축동 809-3	-	314	8~25	4,292	경기도제2청고시 제2006-5096호 (06.07.03)	중고개

* ()는 소로2-302과 중복 결정된 부분의 연장 및 면적

2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)

가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(변경없음)

구 분	위 치	계 획 내 용	비고
규 모		○대지규모 - 주택용지 . 최소개발면적 : 60㎡ (「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」상 주택호수 산정기준에 적합한 토지는 예외로 한다.) . 최대개발면적 : 삭제	
공동개발 대상필지	소규모취락, 중규모취락, 대규모취락, 신규10개취락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(공통사항)	○공동개발 - 60㎡미만의 과소토지로서 인접한 토지가 동일소유자인 경우에 규제제어 - 건축물대장상 공유토지로서 등재된 토지인 경우에 권장제어 - 공공기여대상부지내 전체 필지(국·공유지 제외)	
분할합병 대상필지		○분할합병 - 과대필지 및 부정형필지, 도로의 폐쇄에 대하여 분할 및 합병을 권장제어 - 분할이 가능한 필지의 규모는 600㎡이상으로 권장제어 - 분할 및 합병시 모든 필지에 차량출입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	
		○필지교환 - 토지소유자간 합의하에 필지의 일부를 교환 - 부정형 필지의 정형화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권장 제어	

나)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)

① 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)

< 기 정 >

■ 제1종전용주거지역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중규모 51	중규모 51취락 지구단위계획 구역내	용 도	○ 건축물 용도계획 참조
		건폐율	○ 50% 이하
		용적률	○ 100% 이하
		높 이	○ 3층 이하 (1층 부분에 피로티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4층까지 허용) ※ 노외 주차장내 주차전용 건축물 입지시 3층 이하
		배 치	-
		형 태	○ 건축물의 외벽은 주변경관 및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을 권장 ○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제어 ○ 담장설치시 높이는 1.2m이하로 설치제어 - 담장 설치시 가능한 한 미설치하거나, 식재담장 (생울타리담장)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를 권장
		색 채	○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
		건축선	○ 6m 이하 도로변 : 경계선으로부터 1.5m ○ 6m 초과 도로변 :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

■ 제1종일반주거지역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대규모 77~79 중규모 45~50, 52~72 소규모 24~43 신규 80~89	대규모 77~79취락 중규모 45~50, 52~72취락 소규모 24~43취락 신규 80~89취락 지구단위계획 구역내	용 도	○ 건축물 용도계획 참조
		건폐율	○ 60% 이하
		용적률	[대규모취락] ○ 기준용적률 : 150% 이하 ○ 상한용적률 : 180% 이하 (인센티브 부여시) [중·소규모취락] ○ 기준용적률 : 140% 이하 ○ 상한용적률 : 170% 이하 (인센티브 부여시)
		높 이	○ 3층 이하 (1층 부분에 피로티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4층까지 허용) ※ 노외 주차장내 주차전용 건축물 입지시 3층이하
		배 치	-
		형 태	○ 건축물의 외벽은 주변경관 및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을 권장 ○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제어 ○ 담장설치시 높이는 1.2m이하로 설치제어 - 담장 설치시 가능한 한 미설치하거나, 식재담장 (생울타리담장)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를 권장
		색 채	○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
		건축선	[대규모취락] ○ 8m 이하 도로변 : 경계선으로부터 1.5m ○ 8m 초과 도로변 :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[중·소규모취락] ○ 6m 이하 도로변 : 경계선으로부터 1.5m ○ 6m 초과 도로변 :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

■ 자연녹지지역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중규모 62 신규 80~89	중규모 62취락 신규 80~89취락 지구단위계획 구역내	용 도	○ 건축물 용도계획 참조
		건폐율	○ 20% 이하
		용적률	○ 100% 이하
		높 이	○ 3층 이하 (1층 부분에 피로티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4층까지 허용) ※ 노외 주차장내 주차전용 건축물 입지시 3층 이하
		배 치	-
		형 태	○ 건축물의 외벽은 주변경관 및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을 권장 ○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제어 ○ 담장설치시 높이는 1.2m이하로 설치제어 - 담장 설치시 가능한 한 미설치하거나, 식재담장 (생울타리담장)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를 권장
		색 채	○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
		건축선	○ 6m 이하 도로변 : 경계선으로부터 1.5m ○ 6m 초과 도로변 :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

< 변 경 >

■ 제1종전용주거지역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중규모 51	중규모 51취락 지구단위계획 구역내	용 도	○ 건축물 용도계획 참조
		건폐율	○ 50% 이하
		용적률	○ 100% 이하
		높 이	○ 3층 이하 (1층 부분에 피로티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4층까지 허용) ※ 노외 주차장내 주차전용 건축물 입지시 3층 이하
		배 치	-
		형 태	○ 건축물의 외벽은 주변경관 및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을 권장 ○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제어 ○ 담장설치시 높이는 1.2m이하로 설치제어 - 담장 설치시 가능한 한 미설치하거나, 식재담장 (생울타리담장)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를 권장
		색 채	○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
		건축선	○ 6m 이하 도로변 : 경계선으로부터 1.5m ○ 6m 초과 도로변 :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

■ 제1종일반주거지역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대규모 77~79 중규모 45~50, 52~72 소규모 24~43 신규 80~89	대규모 77~79취락 중규모 45~50, 52~72취락 소규모 24~43취락 신규 80~89취락 지구단위계획 구역내	용 도	○ 건축물 용도계획 참조
		건폐율	○ 60% 이하
		용적률	[대규모취락] ○ 기준용적율 : 150% 이하 ○ 상한용적율 : 180% 이하 (인센티브 부여시) [중·소규모취락] ○ 기준용적율 : 140% 이하 ○ 상한용적율 : 170% 이하 (인센티브 부여시)
		높 이	○ 3층 이하 (1층 부분에 피로티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4층까지 허용) ※ 노외 주차장내 주차전용 건축물 입지시 3층이하
		배 치	-
		형 태	○ 건축물의 외벽은 주변경관 및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을 권장 ○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제어 ○ 담장설치시 높이는 1.2m이하로 설치제어 - 담장 설치시 가능한 한 미설치하거나, 식재담장 (생울타리담장)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를 권장
		색 채	○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
		건축선	[대규모취락] ○ 8m 이하 도로변 : 경계선으로부터 1.5m ○ 8m 초과 도로변 :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[중규모·신규 10개 취락] ○ 6m 이하 도로변 : 경계선으로부터 1.5m ○ 6m 초과 도로변 :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
			[소규모취락] ○ 6m 미만 도로변 : 경계선으로부터 2.5m ○ 6m 이상 도로변 : 경계선으로부터 2.0m ○ 8m 이상 도로변 : 경계선으로부터 1.0m

■ 자연녹지지역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중규모 62 신규 80~89	중규모 62취락 신규 80~89취락 지구단위계획 구역내	용 도	○ 건축물 용도계획 참조
		건폐율	○ 20% 이하
		용적률	○ 100% 이하
		높 이	○ 3층 이하 (1층 부분에 피로티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4층까지 허용) ※ 노외 주차장내 주차전용 건축물 입지시 3층 이하
		배 치	-
		형 태	○ 건축물의 외벽은 주변경관 및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을 권장 ○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제어 ○ 담장설치시 높이는 1.2m이하로 설치제어 - 담장 설치시 가능한 한 미설치하거나, 식재담장 (생울타리담장)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를 권장
		색 채	○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
		건축선	○ 6m 이하 도로변 : 경계선으로부터 1.5m ○ 6m 초과 도로변 :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

②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■ 제1종전용주거지역

구 분	권장용도	허용용도 (A)	불허용도
중규모 51	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	○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, 다목 다가구주택은 6가구 이하 (단,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가구주택은 3가구 이하) ○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(6세대 이하), 다목 연립주택 (동당 6세대 이하) (단,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제외) ○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단, 안마원, 일반업무시설, 전기자동차충전소 제외, 바닥면적 합계 1,000㎡ 미만) ○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(제조업소 제외,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) ○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(박물관, 미술관, 기념관, 단, 연면적 합계 1,000㎡ 미만) ○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 (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외, 바닥면적 합계 1,000㎡ 미만) ○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, 나목 노인복지시설, 다목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(단, 최초 개발 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) ○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※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※ 주 : 각 시설들에 대한 규모 및 세부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

■ 제1종일반주거지역

구 분	권장용도	허용용도 (A)	불허용도
대규모 77~79 중규모 45~72 소규모 24~43 신규 80~89	○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	○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, 다목 다가구주택은 6가구 이하 (단,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가구주택은 3가구 이하) ○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(6세대 이하), 다목 연립주택(동당 6세대 이하) (단,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 제외) ○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 ○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, 옥외 골프연습장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자동차영업소, 게임제공업소(단, 너비 12m 이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허용), 제조판매시설, 다중생활시설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노래연습장(단, 바닥면적 합계 100㎡ 이하의 노래연습장은 허용), 제조업소는 제외, (단,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) ○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(박물관, 미술관, 기념관) ○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(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외) ○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의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(종합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 제외) ○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(유치원, 초, 중, 고), 바목 도서관 (단, 신규 80~89는 유치원 제외) ○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, 나목 노인복지시설, 다목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(단,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) ○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, 석유판매소 ○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목 세차장 ○ 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목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※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※ 주 : 각 시설들에 대한 규모 및 세부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

■ 자연녹지지역

구 분	권장용도	허용용도 (A)	불허용도
중규모 62 신규 80~89	○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	○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, 다목 다가구주택은 3가구이하 ○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 ○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, 옥외골프연습장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제조업소는 제외,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) ○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(박물관, 미술관, 기념관) 및 동식물원(동물원, 식물원, 수족관) ○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○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의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(종합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 제외) ○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(초, 중, 고), 바목 도서관 ○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, 노인복지시설 ○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, 석유판매소 ○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목 세차장 ○ 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목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※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※ 주 : 각 시설들에 대한 규모 및 세부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

다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)

① 전면공지, 대지내조경, 차량진출입불허구간, 경관, 친환경 계획 등에 관한 사항 (변경)

< 기 정 >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							
대규모 77~79 중규모 45~72 소규모 24~43 신규 80~89	소규모취락, 중규모취락, 대규모취락, 신규10개취락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(공통사항)	전면공지	○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공작물, 담장, 계단, 주차장,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. 단, 차량의 진.출입을 불허하기 위하여 볼라드, 돌의자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로이상 도로변에 접한 토지의 경우 전면공지상에 방음식재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한다. 단, 대로이상 도로변에서 진.출입이 허용된 구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. ○보도부속형 -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,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서 조성 ○차도부속형 -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와 전면도로의 포장 및 조성방법에 따라서 조성								
		대지내 조 경	○자연환경이 양호한 주변과 조화로운 환경을 유지하고 전원적이고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지정 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대지내 조경면적</th></tr><tr><td>연면적 2,000㎡ 이상</td><td>대지면적의 20%이상</td></tr><tr><td>연면적 1,000㎡~2,000㎡ 미만</td><td>대지면적의 15%이상</td></tr><tr><td>연면적 1,000㎡ 미만</td><td>대지면적의 10%이상</td></tr></table>	구 분	대지내 조경면적	연면적 2,000㎡ 이상	대지면적의 20%이상	연면적 1,000㎡~2,000㎡ 미만	대지면적의 15%이상	연면적 1,000㎡ 미만	대지면적의 10%이상
		구 분	대지내 조경면적								
		연면적 2,000㎡ 이상	대지면적의 20%이상								
		연면적 1,000㎡~2,000㎡ 미만	대지면적의 15%이상								
연면적 1,000㎡ 미만	대지면적의 10%이상										
차량출입 불허구간	○도로의 소음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계가 높은 도로에 우선하여 조경계획을 하여야 한다. ○대로이상 도로변에 접한 토지의 경우 전면공지상에 방음식재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한다. 단, 대로에서 진.출입이 허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. ○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교차하는 모서리구간 및 모서리로부터 일정거리(5m)내에 출입제어 ○25m이상 간선도로에 직접 접한 토지의 출입제어 - 단,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지(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전까지 한시적 맹지적용, 지형단차에 의한 이면부 차량 출입불가 토지)이거나 의료시설, 주유소, 주차장 및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이 요구되는 시청, 경찰서, 소방서, 동사무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용 ○버스정류장,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 출입제어										
경관	○옥외광고물의 집단설치가 예상되는 지역 제어 - 옥외 광고물의 설치에 고양시「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에 따름 - 상기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「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지침」을 따름										
친환경 계획	○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에는 중수도 시스템 또는 우수 재활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을 권장 ○총 건축공사비의 1%이상 신재생에너지 시설비에 투자 또는 계획하여 총 에너지사용량의 1%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것을 권장										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대규모 77~79 중규모 45~72 소규모 24~43 신규 80~89	소규모취락, 중규모취락, 대규모취락, 신규10개취락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(공통사항)	공공기여 대상부지	○정의 :‘공공기여대상부지’라 함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실효되어 폐지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존치하면서 공공기여 방안을 수립한 지역 ○공공기여대상부지내 필지(국·공유지 제외)는 전체 공동개발(권장)을 원칙으로 하여 부지면적의 15%에 상당하는 공공공지를 조성하여 제공 ○국·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필지의 공동개발(권장)이 어려운 경우, 다음 각호 하나 이상의 방식을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결정. 단, 공공기여대상부지내 맹지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함 - 개별필지 공공공지 조성 후 제공 -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개설도로 부지 제공 - 비용 납부 ○공공공지는 고양시 유지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-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(한면이 1/4 이상 접할 것)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(쌈지공원) 형태로 지상에 설치 - 1개소를 설치하되, 면적은 최소 45㎡이상 - 최소폭은 5m 이상 - 조경, 벤치, 파고라, 시계탑, 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○공공기여대상부지내 국·공유지 제외한 전체 필지를 공동개발한 경우에는 공동개발에 따른 인센티브(용적률 완화)를 부여

< 변 경 >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							
대규모 77~79 중규모 45~72 소규모 24~43 신규 80~89	소규모취락, 중규모취락, 대규모취락, 신규10개취락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(공통사항)	전면공지	○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공작물, 담장, 계단, 주차장,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. 단, 차량의 진.출입을 불허하기 위하여 볼라드, 돌의자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로이상 도로변에 접한 토지의 경우 전면공지상에 방음식재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한다. 단, 대로이상 도로변에서 진.출입이 허용된 구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. ○보도부속형 -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,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<u>공공부분의 보도의 포장 및 조성방식</u>에 따라서 조성 ○차도부속형 -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와 <u>공공부분의 차도의 포장 및 조성방식</u>에 따라서 조성								
		대지내 조 경	○자연환경이 양호한 주변과 조화로운 환경을 유지하고 전원적이고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지정 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대지내 조경면적</th></tr><tr><td>연면적 2,000㎡ 이상</td><td>대지면적의 20%이상</td></tr><tr><td>연면적 1,000㎡~2,000㎡ 미만</td><td>대지면적의 15%이상</td></tr><tr><td>연면적 1,000㎡ 미만</td><td>대지면적의 10%이상</td></tr></table> ○도로의 소음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계가 높은 도로에 우선하여 조경계획을 하여야 한다. ○대로이상 도로변에 접한 토지의 경우 전면공지상에 방음식재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한다. 단, 대로에서 진.출입이 허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.	구 분	대지내 조경면적	연면적 2,000㎡ 이상	대지면적의 20%이상	연면적 1,000㎡~2,000㎡ 미만	대지면적의 15%이상	연면적 1,000㎡ 미만	대지면적의 10%이상
		구 분	대지내 조경면적								
		연면적 2,000㎡ 이상	대지면적의 20%이상								
		연면적 1,000㎡~2,000㎡ 미만	대지면적의 15%이상								
연면적 1,000㎡ 미만	대지면적의 10%이상										
차량출입 불허구간	○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교차하는 모서리구간 및 모서리로부터 일정거리(5m)내에 출입제어 ○25m이상 간선도로에 직접 접한 토지의 출입제어 - 단,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지(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전까지 한시적 맹지적용, 지형단차에 의한 이면부 차량 출입불가 토지)이거나 의료시설, 주유소, 주차장 및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이 요구되는 시청, 경찰서, 소방서, 동사무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용 ○버스정류장,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 출입제어										
경관	○옥외광고물의 집단설치가 예상되는 지역 제어 - 옥외 광고물의 설치에 고양시「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에 따름 - 상기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「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지침」을 따름										
친환경 계획	○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에는 중수도 시스템 또는 우수 재활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을 권장 ○총 건축공사비의 1%이상 신재생에너지 시설비에 투자 또는 계획하여 총 에너지사용량의 1%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것을 권장										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대규모 77~79 중규모 45~72 소규모 24~43 신규 80~89	소규모취락, 중규모취락, 대규모취락, 신규10개취락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(공동사항)	공공기여 대상부지	○정의 : '공공기여대상부지'라 함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어 폐지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존치하면서 공공기여 방안을 수립한 지역 ○공공기여대상부지내 필지(국·공유지 제외)는 전체 공동개발(권장)을 원칙으로 하여 부지면적의 15%에 상당하는 공공공지를 조성하여 제공 ○국·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필지의 공동개발(권장)이 어려운 경우, 다음 각호 하나 이상의 방식을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결정. 단, 공공기여대상부지내 맹지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함 - 개별필지 공공공지 조성 후 제공 -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개설도로 부지 제공 - 비용 납부 ○공공공지는 고양시 유지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-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(한면이 1/4 이상 접할 것)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(쌈지공원) 형태로 지상에 설치 - 1개소를 설치하되, 면적은 최소 45㎡이상 - 최소폭은 5m 이상 - 조경, 벤치, 파고라, 시계탑, 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○공공기여대상부지내 국·공유지 제외한 전체 필지를 공동개발한 경우에는 공동개발에 따른 인센티브(용적률 완화)를 부여

②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 내용 (변경없음)

구 분	완화항목	완화조건	완화내용(%)	비고
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사항	획지분할/합병	권장사항 준수시	기준용적률 × 0.05	
	공동개발	권장사항 준수시	기준용적률 × 0.05	단, 공공기여대상부지는 전체필지(국·공유지제외)의 공동개발에 한하여 적용
	필지교환	권장사항 준수시	기준용적률 × 0.05	
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	전면공지/ 보차혼용통로/ 보행자우선통로	대지내 공지제공시	기준용적률 × (제공면적/대지면적)	기준용적률의 10% 범위내
용도에 관한 사항	권장용도	권장사항 준수시	기준용적률 × 0.05	건축면적의 50%이상 수용시
경관에 관한 사항	경사지붕	권장사항 준수시	기준용적률 × 0.05	
	담장	권장사항 준수시	기준용적률 × 0.05	
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	우수재활용시설 설치	권장사항 준수시	기준용적률 × 0.05	빗물저류탱크용량(Ton) 건축면적 × 0.05 또는 대지면적 × 0.02
	신재생에너지 사용	권장사항 준수시	기준용적률 × 0.05	건축공사비 1%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%이상 부담
건축협정에 관한 사항	건축협정	권장사항 준수시	기준용적률 × 0.2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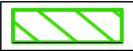
※ 주 : 1) 상한용적률 ≥ 기준용적률 + 용적률 완화적용의 합계

2)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용적률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함

II.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(변경)

기 정	변 경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4조(용어의 정의)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~ 20. (생 략) 21. “공공기여대상부지”라 함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실효되어 폐지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존치하면서 공공기여 방안을 수립한 지역을 말한다. 제18조(건축한계선의 적용 : 규제사항) 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 건축물 벽면이 돌출되어서는 안된다. <table>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>적 용 기 준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대규모 취락</td><td>8m이하 도로변</td><td>경계선으로부터 1.5m</td></tr><tr><td>8m초과 도로변</td><td>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중/소규모/신규10개 취락</td><td>6m이하 도로변</td><td>경계선으로부터 1.5m</td></tr><tr><td>6m초과 도로변</td><td>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</td></tr></table> ② ~ ③ (생 략) ④ 도시계획도로에 적용되는 건축한계선은 도로의 중심선 및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양측으로 동일하게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도로 및 대지의 지적경계선이 과도하게 불규칙하여 통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 계획되어진 건축한계선의 선형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건축한계선의 폭원을 적용할 수 있다. ⑤ ~ ⑥ (생 략)	구 분		적 용 기 준	대규모 취락	8m이하 도로변	경계선으로부터 1.5m	8m초과 도로변	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	중/소규모/신규10개 취락	6m이하 도로변	경계선으로부터 1.5m	6m초과 도로변	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	①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4조(용어의 정의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20. (현행과 같음) 21. “공공기여대상부지”라 함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존치하면서 공공기여 방안을 수립한 지역을 말한다. 제18조(건축한계선의 적용 : 규제사항) ① (현행과 같음) <table>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>적 용 기 준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대규모 취락</td><td>8m이하 도로변</td><td>경계선으로부터 1.5m</td></tr><tr><td>8m초과 도로변</td><td>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중규모/신규10개 취락</td><td>6m이하 도로변</td><td>경계선으로부터 1.5m</td></tr><tr><td>6m초과 도로변</td><td>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</td></tr><tr><td rowspan="3">소규모 취락</td><td>8m이상 도로변</td><td>경계선으로부터 1.0m</td></tr><tr><td>6m이상 8m미만 도로변</td><td>경계선으로부터 2.0m</td></tr><tr><td>6m미만 도로변</td><td>경계선으로부터 2.5m</td></tr></table> ②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삭 제> ⑤ ~ ⑥ (현행과 같음)	구 분		적 용 기 준	대규모 취락	8m이하 도로변	경계선으로부터 1.5m	8m초과 도로변	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	중규모/신규10개 취락	6m이하 도로변	경계선으로부터 1.5m	6m초과 도로변	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	소규모 취락	8m이상 도로변	경계선으로부터 1.0m	6m이상 8m미만 도로변	경계선으로부터 2.0m	6m미만 도로변	경계선으로부터 2.5m
구 분		적 용 기 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규모 취락	8m이하 도로변	경계선으로부터 1.5m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8m초과 도로변	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중/소규모/신규10개 취락	6m이하 도로변	경계선으로부터 1.5m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m초과 도로변	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	적 용 기 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규모 취락	8m이하 도로변	경계선으로부터 1.5m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8m초과 도로변	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중규모/신규10개 취락	6m이하 도로변	경계선으로부터 1.5m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m초과 도로변	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규모 취락	8m이상 도로변	경계선으로부터 1.0m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m이상 8m미만 도로변	경계선으로부터 2.0m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m미만 도로변	경계선으로부터 2.5m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기 정	변 경
제20조(전면공지의 조성방식 : 규제사항) ① ~ ② (생 략) ③ 전면공지(보도부속형)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,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<u>전면보도의</u> 조성방법에 따라야 한다. 그리고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 ④ 전면공지(차도부속형)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와 <u>전면도로의</u> 포장 및 조성방법에 따라서 조성하여야 하며,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 ⑤ (생 략)	제20조(전면공지의 조성방식 : 규제사항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전면공지(보도부속형) ----- ----- <u>공공부분의 보도의 포장 및</u>----- ----- -----. ④ 전면공지(차도부속형) ----- ----- <u>공공부분의 차도의</u>----- ----- -----. ⑤ (현행과 같음)
제21조(보차혼용통로 : 규제사항) ① <u>보차혼용통로는 건축한계선을 통하여 확보하며,</u> 건축법상 제44조(대지와 도로와의 관계) 및 건축법 시행령 제28조(대지와 도로와의 관계)를 적용한다. ② ~ ⑦ (생 략)	제21조(보차혼용통로 : 규제사항) ① <u>보차혼용통로에 접한 대지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하여는,</u> ----- ----- -----.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22조(보행자우선통로 : 규제사항) ① <u>보행자우선통로는 건축한계선을 통하여 확보하며,</u> 건축법상 제44조(대지와 도로와의 관계) 및 건축법 시행령 제28조(대지와 도로와의 관계)를 적용한다. ② 보행자우선통로는 보행 또는 차량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상기 제19조 ②항 각호에 적합하게 확보한다. ③ ~ ⑦ (생 략)	제22조(보행자우선통로 : 규제사항) ① <u>보차우선통로에 접한 대지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하여는,</u> ----- -----. ② ----- -----<u>제21조</u>----- -----. 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기 정	변 경
제32조(공공기여대상부지 : 규제사항) ① ~ ③ (생 략) ④ (생 략) 1. 토지비 산정기준 가. 서로 다른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부지가액을 산정한다. · 서로 다른 2개 감정평가기관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(고양시 고시 제2023-84호(2023.02.24.))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부지를 평가하여 단위면적당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값 나. ~ 다. (생 략) 2. ~ 4. (생 략) ⑤ ~ ⑦ (생 략) ⑧ 도면표시 공공기여대상부지(규제)  < 신 설 >	제32조(공공기여대상부지 : 규제사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1. ----- 가 ----- -----. · 서로 다른 2개 감정평가기관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(고양시 고시 제2023-84호(2023.02.24.))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부지를 평가하여 단위면적당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값 * 해당 공공기여대상부지가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시점으로 한다. (신설) - 고양시 고시 제2023-84호(2023.02.24.), 고양시 고시 제2026-152호(2026.06.02.) 나. ~ 다. (현행과 같음)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⑤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도면표시 공공기여대상부지(고양시 고시 제2023-84호)  공공기여대상부지(고양시 고시 제2026-152호)  부칙 <2026. 06. 02.> 제1조(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적용 시점) ① 이 시행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기 정

변 경

② 공공부분 시행지침

제5조(일반도로)

- ① ~ ③ (생 략)
- ④ 일반도로의 횡단구성은 다음의 폭원별 예시도를 준용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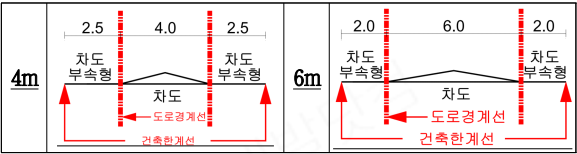
6m		6m 일 방 통 행	
8m 편 측 보 도		8m 보 도 미 조 성	
10m		12m	
15m		20m	
25m			
30m			
35m			
40m			

② 공공부분 시행지침

제5조(일반도로)

-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-----

< 소규모 취락 >



※ 8m 이상 도로는 (대/중규모, 신규 10개 취락) 폭원별 예시도 참고

< 중/대규모, 신규 10개 취락 >

6m		6m 일 방 통 행	
8m 편 측 보 도		8m 보 도 미 조 성	
10m		12m	
15m		20m	
25m			
30m			
35m			
40m			

기 정	변 경
제33조(가로등 배치원칙) ① ~ ② (생 략) ③ 일반가로상에는 <u>메탈할라이드</u>의 광원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공원변에 있어 국부적으로 조정하여 장소별 특색을 갖도록 한다. 제 10 절 공원 제39조(적용범위) ① 본 지침은 도시계획시설중 공원에 적용되는 것으로,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<u>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법률</u> 및 <u>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</u>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.	제33조(가로등 배치원칙) ① ~ ② (생 략) ③ ----- <u>LED</u>의 ----- ----- -----. 제 10 절 공원 제39조(적용범위) ① ----- ----- <u>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법률</u> 및 <u>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</u>,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-----.

-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게재생략하며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